

약사 연수교육 규정

	제정	1974. 11. 8
	개정	1982. 11. 22
보건사회부	승인	1983. 1. 24
	전문개정	1985. 11. 15
보건사회부	승인	1986. 1. 16
	개정	1995. 2. 13
보건복지부	승인	1995. 3. 21
	개정	2001. 12. 1
	개정	2004. 5. 3
	개정	2005. 8. 30
보건복지부	승인	2005. 11. 29
	개정	2010. 4. 1
	개정	2016. 5. 26
보건복지부	승인	2016. 6. 13
	개정	2016. 12. 22
보건복지부	승인	2017. 1. 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조의 약사연수교육업무를 본회가 수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1.16, 95.3.21)

제 2 조 【교육의 호칭】 약사법 제15조의 약사연수교육을 본회에서는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86.1.16)

제 3 조 【대상】 교육의 대상은 약국 개설(관리)약사·근무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제약·유통소속 관리약사로 한다. 다만,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 본회가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약사는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05.8.30, 10.4.1)

제 4 조 【주관】 교육은 본회가 주관하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개정 83.1.24, 86.1.16, 04.5.3, 10.4.1, 16.12.22)

제 5 조 【위탁실시】 본회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회 각 지부로 하여금 실시케 할 수 있으며, 약학교육기관·종합병원 등 본회가 인정하는 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교육방법 및 시간】 ①교육은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95.3.21, 01.12.1, 16.5.26)

②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산하여 연간 총 8

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버 교육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다.(신설 16.5.26)

1. 집합 교육 : 집합하여 받은 교육시간을 이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산정

2. 사이버 교육 : 1개 교육과목 당 2시간 이내로 산정

③본회는 약사가 당해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집합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교육시간은 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연수교육계획서에 따른다.(신설 16.5.26)

1. 학술행사 또는 세미나

2. 16시간 이상의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 교육

3. 16시간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4. 8시간 이상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교육

제 7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86.1.16)

1. 교육의 연간 실시계획

2. 교육의 과목 및 교재개발(개정 86.1.16)

3.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4. 교육으로 갈음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종목과 이수시간 결정(개정 86.1.16)

5. 위탁교육의 과목과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

6.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심의 한다.(개정 86.1.16)

제 9 조 【교육 과목】 ① 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는 약사윤리 및 최신의 약학지식, 약사관계법령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86.1.16, 16.5.26)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신설 16.5.26)

1.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

2. 의약품 안전관리

3. 약국경영

가. 약화사고

- 나. 건강기능식품
- 다. 체외진단의료기기
- 라. 동물의약품
- 마. 약국한약

- 4. 보건의료제도·약사제도 및 보험정책
- 5. 개인정보보호법령
- 6. 기타 약사의 전문성 강화 및 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

③ 당해연도 교육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교육계획서에 따른다.(신설 16.5.26)

제 10 조 【교육계획수립】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연수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86.1.16, 95.3.21)

제 11 조 【수강신청】 교육의 대상자는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86.1.16)

제 12 조 【수료증교부】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법정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참석 확인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05.8.30)

제 13 조 【보고】 교육의 수탁자는 교육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 또는 소속지부에 이수자의 명단을 보고하고 해당지부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수료증의 제시】 본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에게 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경비】 ①본회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86.1.16, 16.5.26)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결정한다.(신설 16.5.26)

- 1. 직접비용 :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식대, 교육광고·안내비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2. 간접비용 :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교육 담당 부서 운영비 등 교육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교재개발, 강사양성, 행정사무 등 교육기관에서 연간 연수교육 운영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

정하여 추가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6.5.26)

④당해연도 수강료에 대한 잉여금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육 기자재 구입 등 연수교육 관련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16.5.26)

⑤매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수강료·잉여금의 결정 근거·징수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6.5.26)

⑥교육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교육 종료시 결산 내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신설 16.5.26)

⑦교육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그 밖에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 운영 규정 및 회계계약 규정을 따른다.(신설 16.5.26)

제 16 조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약사윤리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를 한다.

제 16조의2 【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의 실시·운영,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6.5.26)

②교육자문위원회에는 약계, 학계 등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16.5.26)

제 17 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95.3.21)

보 칙

제1조 (삭제 86.1.16)

제2조 (삭제 86.1.16)

부 칙(74.11.8)

제1조 본 규정에 규정한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회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승인 83.1.24)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승인 86.1.16)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승인 95.3.21)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01.12.1)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4.5.3)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승인 05.11.29)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10.4.1)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승인 16.6.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